

(재)시흥산업진흥원 - 2023 - 76호

『2023 시흥산업진흥원 싱가포르 통상 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재공고

경기도 반도체 특화 산업군 활성화 및 해외 판로 개발 지원 목적, 『2023 시흥산업진흥원 싱가포르 통상 촉진단』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파견개요

- 파견기간 : 2023년 07월 10일 ~ 07월 13일
- 파견지역 : 싱가포르
- 파견규모 : 10개사 내외
- 상담품목 :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분사 또는 공장등록기업으로 반도체 산업군 관련 기업
- 지원내용 : 시장조사비,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항공료 50%(최대 30만원 한 (업체당 1인)) 등
- ※ 참가기업 부담 : 잔여 항공료, 개별체제비(숙박비, 식비 등)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3.05.17(수) 18:00 限
- 신청방법 : 온라인 www.sida.kr
- 신청문의
 - 담당자 : 수출입지원실 김두권 선임매니저
 - 연락처 : ☎ 070-8879-1167 ✉ twobooks@sida.kr
- 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설 명	부수	참조	1. 비 고
1	참가신청서	2023 싱가포르 통상 촉진단 신청서	1부	붙임 1	
2	상담 품목 명세서	현지 바이어 대상 제품 소개서	1부	붙임 2	
3	서약서	사업 신청 및 참여 준수사항 서약서	1부	붙임 3	
4	기업정보조사서	기업정보조사서	1부	붙임 4	수출실적증서
5	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	-	
7	인감증명서	신청 시 활용한 인감 증명서	1부	-	
8	지방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	
9	기타(보유시 제출)	제품 카달로그(국문 또는 영문), 해외규격인증 등 현지 바이어 등에게 공개 가능한 각종 증빙 자료	-	-	

[붙임 2]

상담 품목 명세서

순위	품 목 명	품목설명(기능, 용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상담유형
1	(한글) (영문) (HS CODE)		
2	(한글) (영문) (HS CODE)		

상담 희망품목 명세서 기재 요령

1. 순 위 : 참가업체 상담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 중요도에 따라 기재
2. 품 목 명 : HS 코드는 반드시 기재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3. 품목설명 :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부품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각종 완제품의 명칭도 구체적으로 기재요망
4. 상담유형 : 내수 또는 수출경험에 비추어 적격 바이어, 투자자와의 상담 주선을 위해 해외무역관에서 중점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바이어 유형
(예: 특정분야 전문수입상, 부품 사용 완제품 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원자재 수출상, 1차 가공업체 등) 및 참고가 될 만한 사항

※ 현지 시장성 평가의 주요 자료이므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서 약 서

당사는 재)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시흥산업진흥원 싱가포르 통상 촉진단』 수출 상담회 참가업체로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2023 시흥산업진흥원 싱가포르 통상촉진단 수출상담회 참가 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파견 중 현지법률 및 기타 규정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당사는 시흥산업진흥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당사의 현지 파견요원은 파견기간 중 원활한 통상 촉진단 운영을 위하여 시흥산업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4. 당사는 통상 촉진단 사업 선정 이후 불참, 또는 사업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취소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
5. 당사는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불성실업체 내역을 숙지하고 당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해 향후 2년간 시흥산업진흥원 추진 사업의 참가에 있어 불이익 처분에 이의(민·형사상)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
 -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통상 촉진단 참가에 불참, 취소한 업체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 된 업체
 -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여 참가업체를 선동하거나 비협조적 자세로 성과 저해를 유도한 업체
 - 기타 참가 업체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업체

2023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감)

재)시흥산업진흥원장 귀하

기업 정보 조사서

기업일반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홈페이지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팩스번호				
소재지	본사	(우편번호 :)							
	공장	(우편번호 :)							
상시근로자 수		명			설립일		년 월 일		
보유인증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포함)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이노비즈 <input type="checkbox"/> 메인비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보유 지식 재산권	특허권		건	
				실용신안		건			
				디자인권		건			
				상표권		건			
매출현황	매출액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현황	수출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접수출 <input type="checkbox"/> 간접수출 <input type="checkbox"/> 내수기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천불) (천불) (천불)			
		판매처명 : (거래비중 %)				주요 수출국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미국 <input type="checkbox"/> 일본 <input type="checkbox"/> 유럽 () <input type="checkbox"/> 아시아권 () <input type="checkbox"/> 기타 ()		
	판매처명 : (거래비중 %)								
	판매처명 : (거래비중 %)								
대표자	성명				연락 담당자	성명(직함)			
	휴대폰					휴대폰			
	이메일					이메일			
주요 생산품 정보									
구분	품명				내용(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주요 생산품①	한글명				※ 생산품 특징점 및 기술적 우수성(독창성) 등 작성 요망				
	영문명								
	매출비율	약 %							
주요 생산품②	한글명								
	영문명								
	매출비율	약 %							
주요 생산품③	한글명								
	영문명								
	매출비율	약 %							

※ 주요 생산품별 사진 파일(JPG, PNG 등)을 별도 제출하되, 상기 기재된 생산품명과 파일명이 일치하여 제출 요망
 ※ 생산품 사진이 없을 경우 미제출 가능. 단, 별도 연락을 통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요망

신청(지원)사업 및 기업거래(B2B)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거래(B2B)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대표자 성명, 휴대폰,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핸드폰, 이메일, 파견자 성명(국.영), 직위(국.영), 휴대폰, 구사언어 등	신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홍보, 민원처리, 통계분석	영구 또는 준영구 (정보 제공자의 요청시 즉각 파기)
기업정보	회사명(국.영), 업종, 전화, 홈페이지, 주소, 전년도 수출액 및 매출액, 수출대상국, 주요생산품목(국.영), 공장등록번호 및 소재지	신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홍보, 민원처리, 통계분석	

※ 위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파견자 성명(국.영)	신청(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영구 또는 준영구 (정보 제공자의 요청시 즉각 파기)
기업정보	홈페이지, 주소		

※ 위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3. 선택적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동의 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대표자 이메일	기업 거래(B2B) 활성화 지원의 운영 및 관리, 홍보, 민원처리, 통계분석 등 ※ 선택적 항목은 기업 거래(B2B) 플랫폼을 통해 공개 됩니다.	영구 또는 준영구 (정보 제공자의 요청시 즉각 파기)
기업정보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근로자수, 설립일, 보유인증, 보유재산권, 매출 및 수출현황, 주요 생산품 정보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4.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유관 기관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필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일체	사업 관리 기간 (정보 제공자의 요청시 즉각 파기)
기업 거래(B2B) 플랫폼 서버 관리 기관	기업 거래(B2B) 플랫폼 운영	선택적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일체	서버 관리 기간 (정보 제공자의 요청시 즉각 파기)

※ 위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귀중

2023년 시흥산업진흥원 싱가포르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계			100
기업기본 (32)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해외 규격인증 획득 ¹⁾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 ²⁾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 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면접수당 지급 기업(1)	10 (최대)
참가실적 (5)	직전 2년('21, '20)통상시책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	신규(5), 1회(4), 2회(3), 3회(2), 4회 이상(1)	5
수출실적 (13)	전년도(2021년) 수출금액 ※ 전년도(2021) 수출증명서 미 발급 기간 시 전전년도(2020) 수출증명서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13
시장성 (5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50
참가제한	당해년도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전담멘토,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개별참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기업		탈락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범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관련,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총점의 20%감점
	과거 도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20점

1)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387개

2)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실용신안등록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 대상(총 387개)

※ '23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 지원 대상 준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미국 (71)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T (미국운수성)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 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Green Seal (친환경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 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 템)	NFRC (창호단열규정)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Warnock Hersey Mark)	
	Proposition 65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유럽 (30)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 침)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EC (European Norms Electrical Certification)
ESV		EN ISO 20471	EU 2092/91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GL (독일선급협회)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영국 (11)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UKCA (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SCPN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 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일본 (27)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PAL → PMDA(일본의료기기)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JHOSPA (일본위생수지시험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 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러시아 (10)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우크라이나 (1)	Uni Cert→우크라이나 적합성인증		
말레이시아 (3)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
멕시코 (3)	COFETEL →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칠레 (1)	SEC(칠레에너지관리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대만 (6)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태국(2)	태국 식약청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아라비아(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	-
싱가포르 (5)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PSB → CPS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Infocomm Meda Development Authority)	-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12)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DCG인도식약청	IRS (인도선급인증)
	IBR (인도 보일러 규정)	RDSO (인도 철도인증)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인도네시아 (3)	B 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30)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 건축기 형식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구 CFDA) (중국국가식품감독관리국) 중국위생허가 포함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V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GB-Test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중국 유기농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EL (China Energy Label, 중국 에너지라벨 효율등급)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 제도)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두바이(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캐나다 (8)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CSA (캐나다표준규격)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폴란드 (2)	B mark	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필리핀 (3)	ERC	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Import Commodity Clearance)
라오스(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8)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품허가장품등록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VN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Viet 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호주 (12)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장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	-
남아프리카 공 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이란(2)	ISIRI (이란 강제 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아랍에미리트 (2)	EQM (아랍에미리트 제품적합성마크)	ECAS (아랍에미리트 강제인증)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국제 (80)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 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 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 적의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지정보제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SC (국제산림관리협회의)
	FTC (화염시험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산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12500 (압축공기용 필터국제표준)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 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구격)	NON GMO
	OCS (유기농섬유인증)	OK compost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 단말기보안국제규 격)
	PDI (배관,배수 인증)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CC (중동적합성 마크)	IHE Connectathon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ASC (Ag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UN 38.3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FIDO (생체인증)	Wi-Fi Certified (Wi-Fi 상호운용성인증)
	ZDHC (유해화학물질제로배출협회) (Zero Discharge Hazardous Chemicals)	RCS (Recycled Claims Standard)	Gluten Free Programs (글루텐안 전인증)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RWS (Responsible Wool Standard)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 1. 11.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 1) (제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제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사업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기존) 범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변경) 범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범위반사실 확인시(범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범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범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범위반사실 확인(변경)

(기준)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변경)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변경)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기준)

-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변경)

-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 나. 삭제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5).

- 붙임
- 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협약서
 - 3. (서식3) 이의 및 구제신청서